

행 정 자 치 부

통 보

제 목 겸직허가 등 없이 연구개발 수탁과제 수행 및 연구수당 지급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

내 용

경상남도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농촌진흥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등을 근거로 농촌진흥청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겸직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〇〇〇〇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농촌진흥법」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〇〇〇〇원은 ‘농업과학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연구', '수출농산물 시험·연구·개발', '지역 특화작목의 소득향상 및 현장애로 기술연구' 등 각종 연구개발사업이 주요 관장 업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원에서 제323회 및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2015년 및 2016년 주요업무 보고 자료와 2016.7.7.字 전보 및 직제 개편에 따른 ○○○○원 개인별 사무분장에 따르면 연구개발 수탁과제를 포함하여 각종 시험·연구사업 등이 담당 직무로 되어 있다.

따라서 「농촌진흥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등을 근거로 연구과제를 공모를 통해 수행할 경우에는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등에 따른 담당 직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인 경우에만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아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경상남도에서는 [표] 와 같이 2013년부터 총 254개(9,986백만원)의 연구개발 수탁과제를 추진하면서 사전 겸직허가도 받지 않고,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인지 여부, 초과근무 현황 등을 확인하여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총 195명에게 총882백만원의 '연구수당'을 지급하여, 그 결과 ○○○○원 소속 공무원 정원(2016.11.22. 기준, 146명) 대비 연평균 80.1%인 118명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연구수당을 지급 받았다.

[표] 농업기술원 연구개발 수탁과제 추진현황⁶⁴⁾

<단위: 개, 백만원>

기관명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과제수	경비	과제수	경비	과제수	경비	과제수	경비	과제수	경비
○○○○원	254	9,986	79	3,374	71	2,514	65	2,746	39	1,353

64) ○○○○원 자체연구개발사업(도비) 예산편성 현황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과제수	경비	과제수	경비	과제수	경비	과제수	경비	과제수	경비
280	8,789	67	2,121	68	1,737	71	2,268	74	2,663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 등을 위탁받아 추진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인 경우에만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담당 직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의 복무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이 건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